

##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7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.

발의자 : 신경민 · 인재근 · 전혜숙

윤후덕 · 박재호 · 박찬대

김정우 · 우원식 · 박정

김영춘 · 김현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사(校舍)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,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·수은·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.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).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,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(안 제4조제7항).

##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사(校舍) 안에서의”를 “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”로, “조절”을 “조절과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사 안에서의”를 “학교시설에서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·실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)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교사(校舍)</u> 안에서의 환기·채광·조명·온도·습도의 조절, 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, 오염공기·석면·폐기물·소음·휘발성유기화합물·세균·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) ① ----- ----- 「학교 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----- ----- 조절과 -----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교사</u>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
③ ~ ⑥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

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 
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  
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  
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  
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  
고 대책을 수립·실행하여야 한  
다.